

VII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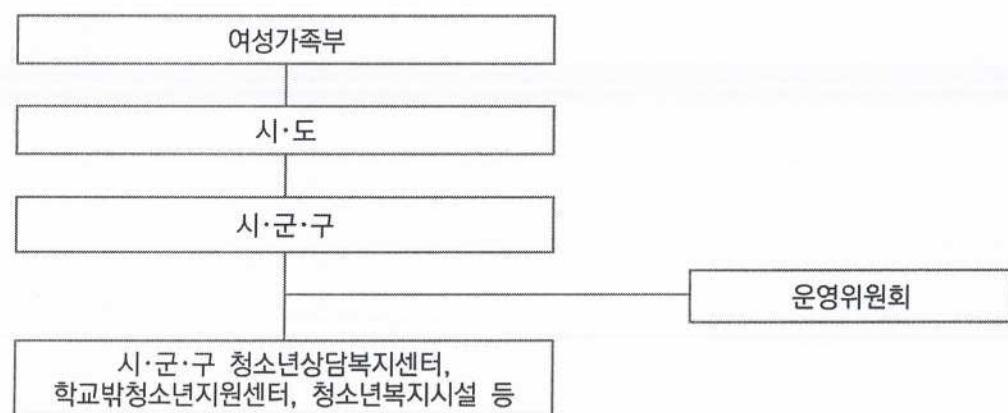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 *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1-2 추진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1-3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도



나. 추진 주체별 기능 및 역할

1) 여성가족부

- 특별지원 사업 총괄·조정
- 사업 운영 지침 마련 및 보급
- 국고 보조금 확보 및 지원
- 제도개선 등

2) 시·도

- 특별지원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자체 예산 확보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지방자치 단체 중심으로 사업시행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
 - 청소년 인구 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소재지 우선 선정 등
- 특별지원 사업 운영 지도 및 감독
- 예산의 집행 관리
 - 특별지원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등
-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 관내 학교,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관련기관, 지역 주민 대상 등 홍보 강화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지원 적극 추진

3) 시·군·구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다른 법에 의한 지원 사실 및 소득수준 조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복지 대상자 조사 담당공무원과 공유하여 지원대상자 판단 시 오류발생 방지

-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사업비 즉시 집행
-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사례관리 계약 의뢰
【서식 제3호】
-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현황 지도·감독
-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지원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
-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4)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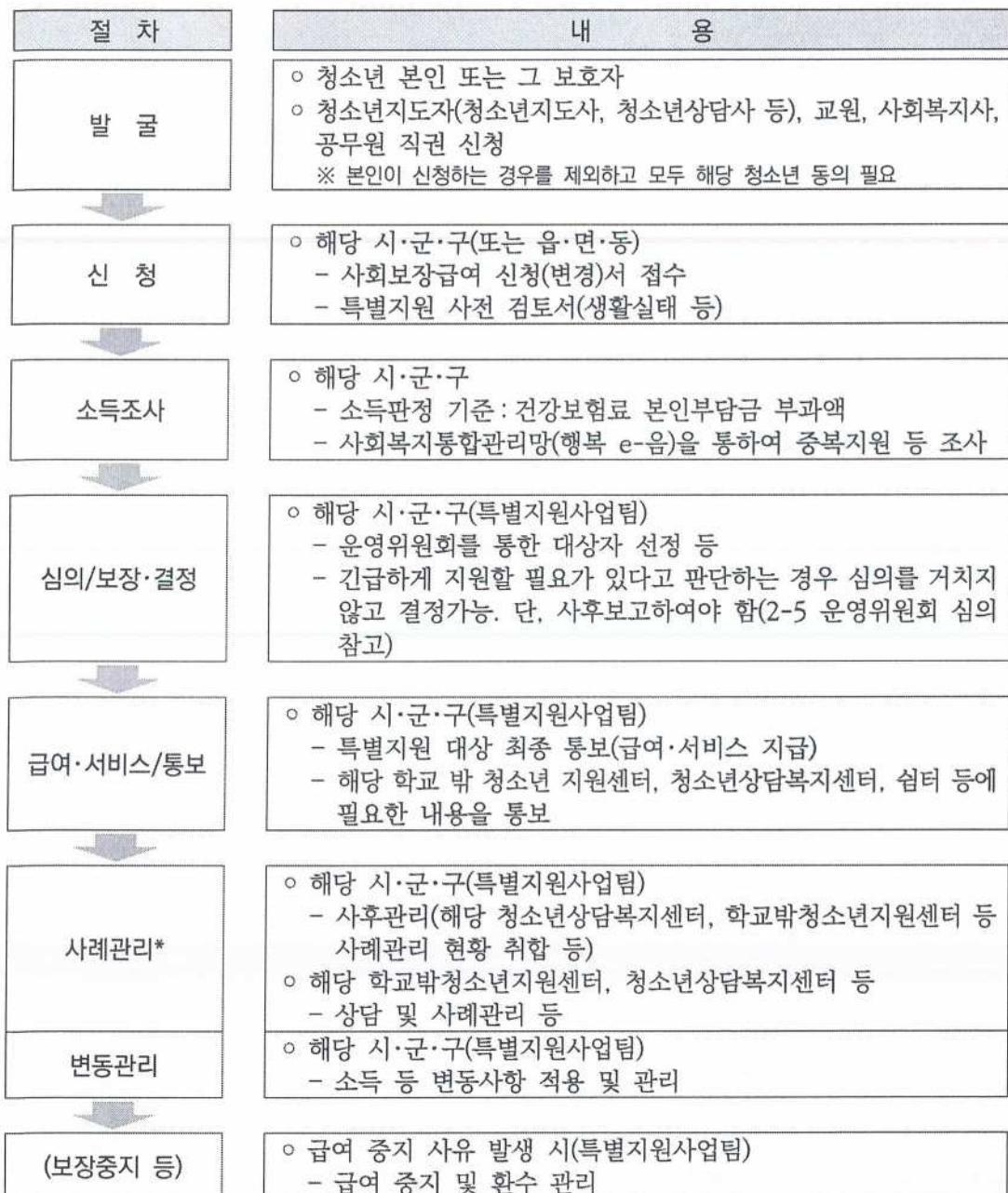
- 구성 및 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
- 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5)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협력기관)

- 특별지원 청소년 발굴 및 대상자 신청
- 특별지원청소년 상담 및 사례 관리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별 개인기록 관리
-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1-4 운영 절차

가.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 및 지도·점검 실시 예정

나.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신청장소 :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자가 신청 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서식 제1호】 작성 제출
신청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7호) 참조)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처리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 · 처리함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가구원 및 소득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 조부모, 만19세 이상 형제·자매 등은 제외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구 분	내 용
조사 선정 기준	<p>중복 지원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지원예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미 개최 시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 서식 제2호】 첨부
지원 내용 종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 연 200만원内外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2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

2-1 대상자

가. 나이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으로서
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예) 2001. 8. 1. 생은 2020. 7월까지 지원 가능.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26. 7월까지 지원 가능

나.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다. 소득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으로,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60호)

- 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2-2 대상자 발굴

가.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신청경로	담당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청소년 본인,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혜택과 중복 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 청소년
학 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교사	정규학교의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 퇴소자,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쉼터 등)	사회복지사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청소년

-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시·군·구에 신청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되는 경우 소속기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
 -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서류 구비 후 시·군·구에 신청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현장 종사자에게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재량권 부여)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
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2-3

특별지원 신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가.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나. 신청 장소 및 기간

- 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기간 : 연중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7호) 참조)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라.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처리함

2-4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예 :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등)의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 조사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가. 소득

1) 소득 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예시〉

1. 아버지가 재혼하여 청소년이 친모와 주거하는 경우, 아버지 가정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친모와 청소년 2인 가구로 산정
2. 지원대상 가구의 청소년(만18세 이하 2인)과 부모, 조부모가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4인 가구로 산정(조부모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3.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 친척집에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친척집 가구원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4. 대상 청소년의 만19세 이상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상 청소년을 보호 할 경우 청소년 1인 가구로 산정(부모의 소득만 조사하므로)
5.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2) 조사내용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조사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

■ 2021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 기준중위소득 72%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3,000	76,670	33,923	77,328
3인	2,868,000	98,836	77,494	99,502
4인	3,511,000	121,562	114,866	122,988
5인	4,145,000	143,100	138,486	144,660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2조제4항에 따른 '202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입력
(*소득 증빙서류 필요)

- *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 (예 : 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 2022.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소득판정방식 전환으로, 2021년부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소득기준 산정방법 변경 예정임(추후 공지)

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

1) 청소년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확인이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지원에서 제외된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해당 기관에 입소한 자

2) 특별지원 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특별지원 청소년이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지원 자격 부여
- 지속거주 요건: 특별지원 청소년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3) 처리방법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본인 확인 또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청소년은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등에 의뢰 사전상담 우선 실시
- 상담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방식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며, 업무절차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지침 준용

4) 관리방안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 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 등)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 시까지 특별지원 청소년 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주민등록 미식별 대상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

〈예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사업 안내)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 - ⑦⑧⑨⑩⑪⑫⑬ ① - 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③ : 자료구분(5) ④ - ⑥ : 일련번호 ⑦ : 성별(남 : 1, 3 / 여 : 2, 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⑧ - ⑨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⑩ - ⑬ : 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예시〉 '14. 1. 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번째 노인
(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3051-2142349

- 시·군·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도

다.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부모의 방임, 폭력 및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소득 확인 시 1인 가구로 인정

2-5 운영위원회 심의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1) 역 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2) 심의 예외사항

- 시·군·구는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가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다만, 시·군·구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나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고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함
 - 쉼터,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경우와 같이 가출, 성매매 노출위험 등 보장처리 기한(30일)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금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